

문서번호 : 2019 - 1123호

수 신 :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

참 조 : 아파트 특별공급 담당님

제 목 :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장애인 특별공급 명단 요청의 건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당사에서 건설하는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특별공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」에 따라 해당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) 사업 개요

- 주 택 명 :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
- 사 업 장 위 치 : 경기도 여주시 교동 115-9번지 일원
- 건 축 개 요 : 아파트 8개동 총551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

■ 주택형

주택형	타입	세대수
084.9539A		314
084.9907B	84B	157
084.9676C	84C	80
합계		551

2) 특별공급 일정(예정)

- 입주자모집공고 : 2019.10.10.(목)
- 모델하우스오픈 : 2019.10.11.(금)
- 청 약 접 수 : 2019.10.15.(화)
- 당첨자 발표 : 2019.10.24.(목)
- 계약기간 : 2019.11.05.(화) ~ 11.07.(목)
- ※ 상기 일정은 예정(안)으로 이후 변경될수 있음 (문의전화 : 1600-0878)

3) 대상자 명단 회신 요청일 : 2019년 10월10일(목) 16:00 까지

※ 원활한 특별공급접수를 위하여 상기 요청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.

※ 위 사업개요 및 분양일정은 예정(안)이므로 변경 시 별도 연락 드리겠습니다

※ 홈페이지 개설 준비중으로 홈페이지 주소 미정입니다

붙임: 1.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 및 자격 2. 단위세대 평면도

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분양사무소장



2019-09-03 09:59

#붙임1

1.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세대 및 자격

1)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세대

구분	84A	84B	84C	합계
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	3(1)	1(0)	0(0)	4(1)

☞ ()표시는 예비입주자 배정 세대수임.

2)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

■ 신청자격

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10.10.)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(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

- (당첨예정자)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'당첨자'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'당첨자'가 되는 분
- (예비대상자)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'예비자'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'당첨자'가 될 수 있는 분

추천대상자	입주자저축 구비여부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철거민 등	필요 없음
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 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,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	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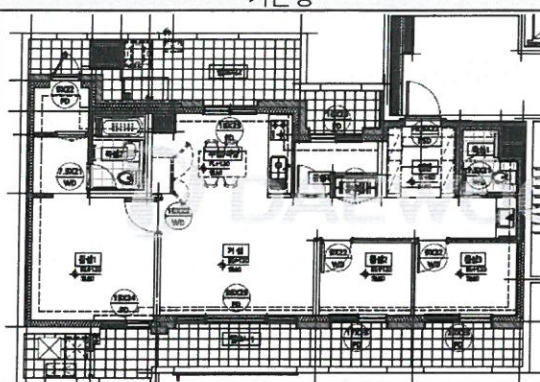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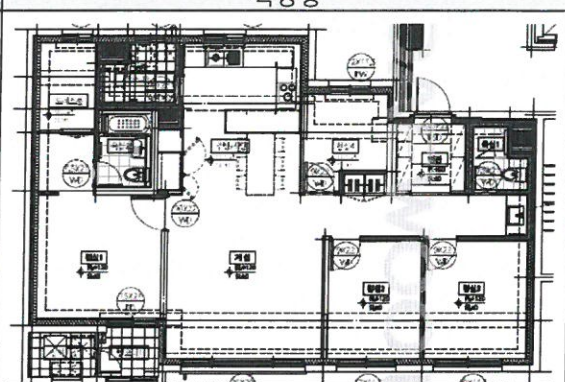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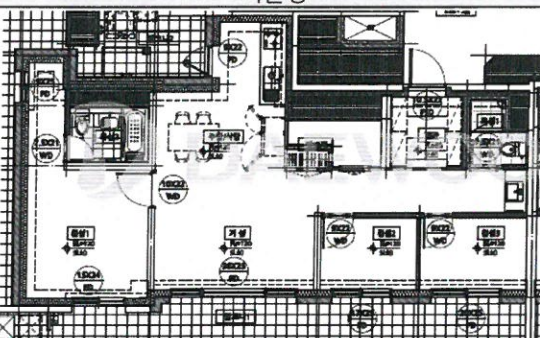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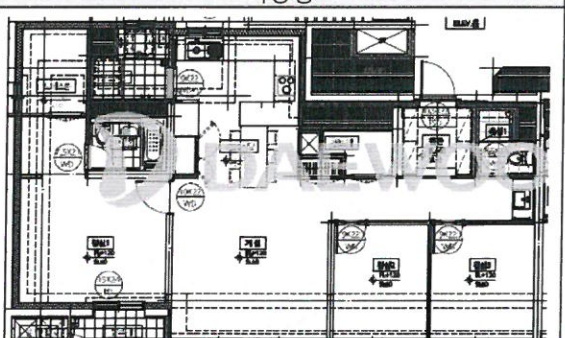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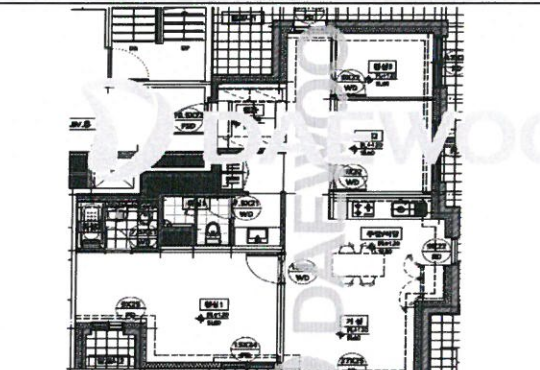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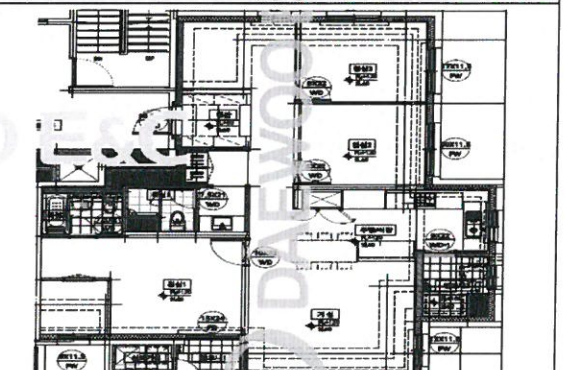
■ 유의사항.

-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(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.)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.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(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(2019.10.15.)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불가]
-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청약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, 일반공급의 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.
-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,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('10.2.23)이전에 "3자녀 우선공급" 및 "노부모부양 우선공급"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 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)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·동별·층별·향별·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. 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불가)
-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(기관추천, 국가유공자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 포함)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,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40% 범위에서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,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1. 단위세대 평면도

84A	기본형 	확장형 
84B	기본형 	확장형 
84C	기본형 	확장형 

※ 위 단위세대 평면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